

2021년도 (재)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

의안 번호	1931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1. 4. 5.

제 출 자 : 달성군



1. 제안이유

- 2021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(재)달성문화재단 사업비 출연 : 금875백만 원

-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민들의 문화적 삶의 향유를 위하여 예비문화도시 사업 추진
- 달성문화재단 10주년을 맞이하여 달성군 대표 문화브랜드로 자리매김한 달성100대 피아노,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질적 양적 다양화
-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생활문화 생태계 확대 지원

- 붙임 1. 출연 심의요구서
2. 사업부서 검토의견
3. 출연기관 현황

출연 심의요구서

출 연 대 상	○ 기관명 : (재)달성문화재단 ○ 대 표 : 김문오 ○ 일반현황 :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2길 18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 연 사업비	○ 출연 예정금액 : 875백만 원 (군비 875백만 원) 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 : 백만 원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 분</th><th rowspan="2">사업 기간</th><th rowspan="2">2021 예산액</th><th rowspan="2">2021 추정 요구액</th><th colspan="5">재 원 별</th></tr> <tr> <th>계</th><th>국 비</th><th>시 비</th><th>군비</th><th>기 타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합 계</td><td></td><td>850</td><td>875</td><td>875</td><td></td><td></td><td>875</td><td></td></tr> <tr> <td>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</td><td>1~12월</td><td>300</td><td>450</td><td>450</td><td></td><td></td><td>450</td><td></td></tr> <tr> <td>달성 100대 피아노</td><td>10월</td><td>0</td><td>100</td><td>100</td><td></td><td></td><td>100</td><td></td></tr> <tr> <td>달성 대구현대미술 제</td><td>9~10월</td><td>400</td><td>200</td><td>200</td><td></td><td></td><td>200</td><td></td></tr> <tr> <td>하빈 행복생활문화센 터 운영</td><td>5~12월</td><td>0</td><td>75</td><td>75</td><td></td><td></td><td>75</td><td></td></tr> <tr> <td>예술자치구역</td><td>1~12월</td><td>150</td><td>50</td><td>50</td><td></td><td></td><td>50</td><td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사업 기간	2021 예산액	2021 추정 요구액	재 원 별					계	국 비	시 비	군비	기 타	합 계		850	875	875			875		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	1~12월	300	450	450			450		달성 100대 피아노	10월	0	100	100			100		달성 대구현대미술 제	9~10월	400	200	200			200		하빈 행복생활문화센 터 운영	5~12월	0	75	75			75		예술자치구역	1~12월	150	50	50			50	
구 분	사업 기간					2021 예산액	2021 추정 요구액	재 원 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계	국 비	시 비	군비			기 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합 계		850	875	875			87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	1~12월	300	450	450			4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달성 100대 피아노	10월	0	100	100			1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달성 대구현대미술 제	9~10월	400	200	200			2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하빈 행복생활문화센 터 운영	5~12월	0	75	75			7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예술자치구역	1~12월	150	50	50			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 연 필요성	○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, 문화기반시설의 전문적 운동을 위해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지원 ○ 타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예술 사업추진으로 달성의 문화위상을 제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거 법령	○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(운영 재원 등)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보조금,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○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(시책과 권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, 보호, 육성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업 부서 의견 (총평)	○ 지역의 주요 문화자원 발굴을 통한 자산가치 증대 ○ 문화예술 중심도시 브랜드 가치 창출 ○ 각종 신규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의 창조적 발전에 기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사업부서 검토의견서

1.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○ 경영평가(한국산업관계연구원, '20. 3. 25. ~ 6. 22.)

- 2020년(2019년 실적) 경영실적 평가결과 : A등급(91.79점)

평가분야	평가배점(%)	평가점수	비고
지속가능경영	30	27.89	• 리더십 지표 • 전략 지표 • 운영 적절성 지표 • 인사·조직 지표 • 재무관리 지표 • 예산관리 지표
경영성과	40	34.75	• 사업지표 • 사업성과 적절성 지표 • 고객만족 지표
사회적가치	30	29.15	• 일자리 확대 지표 • 사회적 책임 지표
총 점	100	91.79	

2.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의견

○ 2021년 출연금 875백만원 교부로 재단 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

- 2021 달성 100대 피아노등 자체사업비등 875백만 원

3.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

(단위 : 백만 원)

구 분	2019년 결산액	2020년 이월금 활용	2021년 당초 예산액 (A)	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(안)			
				기관 요구액 (B)	부서 검토액 (C)	증감 (C-B)	당초예 산대비 증감액 (C-A)
자체사업비	1,006	650	850	1,725	1,725	0	875
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	0	0	300	750	750	-	450
달성 100대 피아노	529	650	0	100	100	-	100
달성 대구현대미술제	361	0	400	600	600	-	200
하빈 행복생활문화센터 운영	0	0	0	75	75		75
예술자치구역	116	0	150	200	200	-	50

출연기관 현황

기 관 명	(재)달성문화재단				전화번호	053.659.4271	
					홈페이지	www.dsart.or.kr	
설립근거	민법제32조,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,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,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						
주요연혁	2011.05.17. 등기						
임원 (21.3.26. 현재)	직책	성명	주요경력			임기	
	이사장	김문오	달성군수			재임기간	
	대표이사	서정길	現 달성복지재단 이사장			2020.8.20.~2022.8.19	
	비상임이사	김철식	달성군청 참꽃갤러리 관장			2020.8.23.~2022.8.22	
	비상임이사	도원길	농업경영인 달성군 연합회 군감사			2020.8.23.~2022.8.22	
	비상임이사	이치우	한국예총대구연합회 부회장			2020.8.23.~2022.8.22	
	비상임이사	김정화	계명문화대학교 부교수(생활음악)			2020.8.23.~2022.8.22	
	비상임이사	전유진	달성군학부모협회 회장			2020.8.23.~2022.8.22	
	비상임이사	한대곤	한창실업(주) 사장			2021.3.26.~2022.8.22	
	비상임이사	표준식	달성군 정책관광국장			재임기간	
	감사	도창곤	한경회계법인 전무이사			2020.8.23.~2022.8.22	
	감사	김재성	달성군 문화체육과장			재임기간	
주요기능	○ 문화예술의 창작, 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○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과 개최 ○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○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기획 및 운영						
최근3년간 예산현황	연 도	2018년	2019년	2020년	재무현황 2020.12.31 기준	자산	9,110백만 원
	예산액	4,213	4,866	6,692		부채	1,727백만 원
	지자체 지원액	3,190	3,393	5,437		자본	7,383백만 원

1. 예산액은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
2. 지자체 지원액은 해당 기관 예산액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(출연금, 민간위탁금 등)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28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5.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

□ 「문화예술진흥법」

문화예술진흥법 제3조(시책과 권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, 보호, 육성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.

□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

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(기본재산 및 재정지원)

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달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.)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② 군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(운영재원 등)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보조금,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